학교법인 의암학원 공고 제2026-4호

2026학년도 정주고등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학교법인 의암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정주고등학교의 사무직원 공개경쟁 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 월 17 일

학교법인 의암학원 이사장

1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

시험구분	직렬(직류)	계급	채용예정 인원(명)	비고
			일반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명	

※ 임용예정시기 : 2027년 1월

2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심사: 근무경력 10점, 자격증 5점, 자기소개서 35점 합계점수 50점

※ 동점자는 1차 서류심사 통과

나. 2차 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시험 실시

○ 서류전형 50점, 심층면접 50점 합계점수로 최종 합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 학교장 제청으로 법인이사회 심의 후 최종 합격자 선발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준용)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 연령

계급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다.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4 시험 일정

가. 공고일자: 2026. 11. 17.(화)

나. 서류접수: 2026. 12. 4.(금) ~ 12. 8.(화) 16:00 마감

다. 서류심사: 2026. 12. 9.(수)

라. 면접시험: 2026. 12. 11.(금) 10:30~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21.(월) 16:00

시험구분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서류접수 기간	2026. 12. 4.(금) ~ 12. 8.(화) 16:00	2026. 12. 9.(수) 16:00
면접시험	2026. 12. 11.(금) 10:30~	최종합격자 2026.12.21.(월)16:00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정주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2. 4.(금) ~ 12. 8.(화) 16:00까지
(접수가능시간: 09:00 ~ 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 정주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증명)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고서(특수관계자,이해관계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라.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선글라스 등 착용 불가

마. 응시표 지참

○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서류 심사

구 분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합계
반영비율	10%	5%	35%	50%
점수	10	5	35	50점

※ 평정 요소별 배점 범위 내에서 채점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점 5점 반영

7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자격증,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3배수 선발

나. 면접시험

○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방법: 아래 평정 요소에 대한 설문 면접
-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원으로서의 태도 함양
- 인성 및 인격·소양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은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자격증 및 근무경력을 점수화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함)

라.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1.2차 전형 결과(1차 50%, 2차 50%) 성적이 높은 순서로 2배수 선정함.
○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응시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거나 건학이념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아니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2일전까지 정주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 결격사유,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의암학원(정주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주고등학교 행정실(063-530-5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학교법인의암학원 정주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직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학교법인의암학원 이사장 귀하

<table>
<tr><td>※응시번호</td><td colspan="2">의암학원 -</td><td rowspan="3">성명</td><td>(한글)</td><td rowspan="3">(3.5cm×4.5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td></tr>
<tr><td>응시분야</td><td colspan="2">교육행정</td><td rowspan="2">(한자)</td></tr>
<tr><td>응시직급</td><td colspan="2">(9급)</td></tr>
<tr><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2">-
X X X X X X X</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전자우편</td><td colspan="5"></td></tr>
<tr><td>전 화</td><td colspan="5"></td></tr>
</table>

.....

응 시 표

<table>
<tr><td rowspan="2">※응시번호</td><td rowspan="2">의암학원 -</td><td>응시분야</td><td>교육행정</td><td rowspan="2">사진</td></tr>
<tr><td>응시직급</td><td>(9급)</td></tr>
<tr><td>성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2026년 월 일
학교법인 의암학원 이사장</td></tr>
</table>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교육행정 9급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u>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u>합니다.

[붙임 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의암학원 -	응시분야	교육행정	성 명	
		응시직급	9급		

나. 응시자격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력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근무기관(부서명)	근 무 기 간	직 위	담당업무
경력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다. 기타사항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수상실적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교육행정	성 명	홍길동
		응시직급	9급		

나. 응시 자격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00학교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행정업무*
00시청(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행정업무*

다. 기타사항(해당자에 한해 입력)

라. 하단에 자필로 서명 또는 본인도장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1. 성장과정과 학창시절

2. 성격의 장·단점, 대인관계

3. 취미 및 특기

4. 지원동기 및 업무경험

5. 임용 후 계획(업무, 생활면)

6. 기타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글자색 : 검정색)

2026. . .

작 성 자 : (서명)

[붙임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응시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6학년도 의암학원 사무직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6학년도 의암학원 사무직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 . . 성명: (인)	2026. . . 성명: (인)

[붙임 5]

신고서(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해당 학교법인 유지·경영학교에 귀하의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인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채용 담당자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 배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며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등)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채용지원자가 채용기관에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인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응시자의 응시번호, 성명 - 이해관계인·특수관계인의 소속, 직급, 성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 절차 마감까지. 단, 필요시 응시자 본인의 퇴직(의원면직 등 포함)까지 가능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경우 공정한 채용업무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 또는 이해관계 : 해당 학교법인 유지·경영학교에 응시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름)이 근무하는 경우 또는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름)이 해당 법인 임·직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본인 및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 동의 및 신고서**

구 분	응시번호	성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본인			□ 예 □ 아니오

구 분	관계	소속(법인)학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해 관계인, 특수 관계인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후 제출

2026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채용서류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모를 경우 생략 가능)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학교법인 의암학원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